

대법원 2015. 12. 10 선고 2015다21707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등]

---

### 재판경과

대법원 2015. 12. 10 선고 2015다217072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15. 5. 12 선고 2014나2008439 판결

### 전 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 2015. 12. 10.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. 5. 12. 선고 2014나2008439 판결

### 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# 이 유

1.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

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 4인은 이 사건 펜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C 토지를 피고의 실질적인 소유(동업관계에서의 지분)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고, 그 후 이 사건 펜션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펜션사업에 다른 상호간의 채권·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,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## **2.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에 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**

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의 매도인 또는 원고의 계약상대방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을 주도한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에서 원고의 유일한 상대방이므로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5,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한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서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,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## **3. 결론**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대법관고영한**

**주심대법관이인복**

**대법관김소영**

**대법관이기택**